

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04. 6. .
제출자 구미시장

□ 폐지사유

- 『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』는 공업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『지방공업개발법』에 근거하여 1989. 5. 제정·시행하여 왔으나
『지방공업개발법』이 폐지(1990. 1. 13)되고, 관련 법률을 정비 통합하여 『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』과 『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→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(2002. 12. 30. 개정)』이 새로 제정 시행되어 산업단지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고, 또한, 세부적인 사항은 『산업단지 관리지침』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현행 『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조례(제0071호 1995. 01. 01)』를 폐지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폐지

□ 참고사항

-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, 제7조
-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, 제 32조

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구미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